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15일, 안상훈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상훈의원)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을 신설하고 복수국적자의 국내 거주사실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일반 노인과 복수국적자 등 간의 형평을 제고하고, 기초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의 판단에 개별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적부조제도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아닌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국내 거주 기간의 요건을 적용하려는 안 제3조제3항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무엇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해외 사례 및 외국인 귀화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역사적 이주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